

장기요양기관 CCTV 자체점검표

시설명	화성꽃피는요양원	시설유형	노인요양시설	시설장	이성순	연락처	010-2409-2131	
시·도	경기도	시·군·구	화성시	담당공무원		점검일		
점검유형	☒ 시설 자체점검 ☐ 지자체 현장점검 ☐ 합동점검 점검자: 사무국장 김부경 점검자: 이성순, 김부경 점검자:							
CCTV 설치여부	☒ CCTV 설치 ☐ 미설치 동의 ☐ 네트워크카메라							
설치장소	공동거실 (복도포함)	침실	현관	물리(작업) 치료실	프로그램실	식당	엘리베이터	기타
	9개	40개	1개	1개	1개	1개	1개	10개
시스템 입력사항과 일치 여부			☒ 확인 (시설에서 자체 입력하는 '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' 내용과 일치해야 함)					
☐ 점검자 종합 의견								
총 64대 이상없음(2025년 08월 27일 cctv 추가 설치함) 2대 신규설치, 1대 현관에서 4층 복도 끝으로 이동 설치함								

점 검 사 항		점 검 결 과		
		예	아니요	비고
☒ CCTV 미설치·미운영 시설				
1. CCTV 미설치(미운영) 동의서 신고 여부				
	-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미설치(미운영) 동의서를 받고 시군구에 신고하였는가?	☐	☒	해당사항 없음
2.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여부				
	- 수급자, 보호자, 종사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치(운영)하고 있는가?	☐	☒	지자체 보고일 (00.00.00.)

※ 폐쇄회로(CC)텔레비전(TV) 미설치(미운영) 시설은 여기까지만 확인,
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시설은 다음의 아래 항목(① ~ ④) 전체를 확인

※ 폐쇄회로(CC)텔레비전(TV),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·운영 시설

점 검 사 항		점 검 결 과		
		예	아니요	'아니요' 시, 사유 또는 조치계획
1 설치기준				
① (필수설치 구역)				
-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필수 설치구역에 1대 이상 설치되었는가?		☒	☐	
- 일부 장소에 미설치 된 경우,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미설치(미운영) 동의서를 받고 시군구에 신고하였는가?		☐	☐	
② (촬영동의)				
- 침실 촬영 동의를 받은 후 촬영을 하고 있는가?		☒	☐	
③ (상시녹화)				
- 24시간 상시 촬영·녹화를 하고 있는가?		☒	☐	
④ (성능기준)				
- 130만 화소 이상의 화질, 60일 이상 저장용량인가?		☒	☐	
-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불가한가?		☒	☐	
⑤ (CCTV 안내판)				
-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고 필수 설치장소에 설치되었는가?		☒	☐	
2 관리기준				
① (위·변조 방지 조치)				
-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에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 설정하고, 로그인 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였는가?		☒	☐	
② (접근통제 및 제한 조치)				
- 최소한의 권한 부여자만 영상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가?		☒	☐	
③ (물리적 조치)				
-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, 보관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는가?		☒	☐	
④ (내부 관리계획 수립·시행)				
- 필수 작성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내 안내 게시판,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가?		☒	☐	

점 검 사 항		점 검 결 과		
		예	아니요	'아니요' 시, 사유 또는 조치계획
③ 열람 및 모니터링				
① (열람규정)				
- 열람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?		☒	☐	
- 영상정보 이용·열람 조치 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?		☒	☐	
② (영상정보 보관)				
- 60일 이상 보관기간을 준수하고 있는가?		☒	☐	
- 3개월 범위 내 1회 이상 삭제하고 있는가?		☒	☐	
③ (모니터링)				
- 모니터는 접근권한이 있는 지정된 종사자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?		☒	☐	
- 모니터링은 상시가 아닌 특정시간(야간시간)에만 실시하고 있는가?		☒	☐	
④ (목적 외 사용 금지) 시설장, 사무국장 외 종사자에게 확인				
- 시설 외부에서는 CCTV 영상에 접근(열람·모니터링 포함)할 수 없도록 설치·운영하고 있는가?		☒	☐	
- CCTV를 통해 시설 종사자의 근로 상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는가? (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과 직접 관련한 사항은 제외)		☐	☒	'예'인 경우 지자체는 즉시 사유파악
④ 기타 점검 및 조치				
① (작동 및 점검)				
-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?		☒	☐	
-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?		☒	☐	
② (수탁자 관리)				
-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감독하고 있는가?		☒	☐	
③ (교육)				
- CCTV 관리책임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였는가?		☒	☐	
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점검함 2025년 . 9월 .01일. 점검자 : 소 속 화성꽃피는요양원 직급 시 설 장 성명 이성순 (인) 점검자 : 소 속 화성꽃피는요양원 직급 사무국장 성명 김부경 (인)				

참고

장기요양기관 CCTV 점검표 작성 설명

1 설치기준

점검 항목	점 검 방 법
1-① (필수설치 구역)	① 필수 설치구역인 각 공동거실(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), 침실, 현관(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), 물리(작업)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,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의 카메라 설치했는지 확인 ② 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범위가 축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③ 필수 설치장소 중 일부만 미설치(미운영)한 경우, 해당 장소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미설치(미운영) 동의서를 받고 시군구에 신고했는지 확인 (시군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)
1-② (촬영동의)	① 침실 촬영 전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 ② 촬영 동의를 하지 않은 침실의 수급자가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 ※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중 한 명의 동의만 받으면 되며, 수급자의 동의가 우선임 - 다만 수급자가 인지저하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음
1-③ (상시녹화)	① 수급자의 생활공간인 침실, 공동거실(복도포함)이 24시간 상시 촬영·녹화되고 있는지 확인 ※ 기저귀 케어, 탈의 시 등에 사용하는 가림막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타 수급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CCTV를 가리는 용도가 아님 - CCTV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발생 또는 학대가 의심될 때 법적 열람권자의 요청을 받아 열람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, 평소에 해당 영상이 모니터링되는 것은 금지하는 행위임 ② 물리(작업)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시간 외에는 잠금장치 하여 입소자 출입 제한 가능하다면 동작감지기능 설정가능
1-④ (성능기준)	① 화질 등급이 고해상도(HD, High Definition) 이상 - 가로픽셀 1,280, 세로픽셀 960, 해상도 130만화소 이상, 초당 10장 프레임 저장기능 ② 60일 이상의 저장용량, 임의조작 X, 녹음기능 X
1-⑤ (안내판)	① 안내판 분실 또는 훼손 여부 확인 ② 시설 출입구, 주변 경계부(담장)에 모두 설치 ③ 안내판 기재 사항 확인, 실제 설치 및 운영 일치 여부 확인 * 연락처: 유선 연락처(개인 핸드폰번호 X) ※ CCTV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 출입 시, 본인의 영상정보가 촬영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반드시 안내판을 출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

2 관리기준

점검 항목	점 검 방 법
2-① (위·변조 방지 조치)	① 저장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 -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와 로그인 암호 설정 - 해킹 방지 등 보안을 위해 초기 설정 암호 변경, 주기적으로 암호 변경하고 관리 -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 -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는 운영담당자 등 영상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공유
2-② (접근통제, 제한조치)	①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였는지 확인 - 관리책임자: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- 운영담당자: 일상적인 관리·유지, 열람 요청의 접수·처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 - 모니터링 담당자: 특정시간(야간시간)에 수급자의 상태·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 (야간에 모니터를 보는 시설의 경우에만 해당) ※ 영상정보 접근권한 부여 시, 종사자 중 특정인으로 지정해야 함 (불특정인 지정 X) ② 영상정보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서만 영상정보를 이용·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있는지 확인 ③ 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는 접근권한 부여자 외 접근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 ④ 모니터 가 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직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※ 모니터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(공개된 장소 설치 X)
2-③ (물리적 조치)	① 저장장치 가 접근이 제한된 별도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-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,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
2-④ (내부 관리계획)	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황에 맞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②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설치·운영 사항 동일 여부 ※ 카메라 대수 및 위치,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, 촬영 및 녹화 시간, 영상정보 보관기간, 영상정보 보관 장소, 안내판 등의 변경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함 ③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행 여부 ※ ①에 명시된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④ 내부 관리계획을 시설 내 게시판,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수급자, 보호자, 종사자 등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 가능한지 를 점검 ※ 내부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즉시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하여 재공지해야 함

3 열람 및 모니터링

점검 항목	점 검 방 법
3-① (열람규정)	① 법적 열람권자 및 열람 절차 숙지 및 준수 여부 - 열람 요청자에게 열람 필요사항 10일 이내 통지, 열람일시가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,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열람 요청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즉시 열람 - 열람 거부 시, 열람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 통지 ② (열람 사례가 있는 경우) 영상정보 관리대장, 열람요청서, 결정통지서,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확인하여 절차에 이상 없었는지 점검
3-② (영상정보 보관)	①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 되어 저장·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② 기록된 영상자료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- CCTV 영상물파일 삭제·파기 관리대장(별지 제 11호) 확인 ※ 수급자 및 보호자의 열람 요청 또는 사고 관련 영상으로 영상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(60일)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,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함
3-③ (모니터링)	① 특정 시간(야간시간)에 입소자의 상태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관인지 확인 ※ 상시 모니터링은 금지 , 야간 모니터링 실시 기관은 평소에는 화면을 꺼 놓는다거나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를 통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②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화면 송출하고 있다면 즉각 시정 조치
3-④ (목적 외 사용금지)	※ 3-④ 는 시설장, 사무국장 외 종사자에게 확인 ① 시설 외부에서 CCTV 영상정보를 열람·모니터링 하고 있을 시 즉각 시정조치 ※ CCTV는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시설 외부에서 영상정보를 열람·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임 ② CCTV를 통한 종사자 노동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각 시정조치 ※ 종사자 노동 감시,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*임 인근 경찰서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(☎118)에 신고 가능 * 금지되는 행위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(개인 식별 가능한 CCTV 영상 포함)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
4 기타 점검 및 조치

점검 항목	점 검 방 법
4-① (작동 및 점검)	① 영상정보 저장 일수, 성능 이상 등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② 기기 이상 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※ 주 1회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기 고장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기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기간 중 영상정보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CCTV 장치 임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영상 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
4-② (수탁자 관리)	① CCTV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 일부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 시, 영상정보 조작·유출 등 철저한 관리 ※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에 대한 위탁 불가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
4-③ (교육)	①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여부